

청소년 탈 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권 해 수** · 윤 일 홍***

국 | 문 | 요 | 약

그동안 국내 범죄학계에서는 범죄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온 반면, 탈비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다소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탈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대안으로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과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처우와 관련된 형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탈비행의 개념을 완전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측정방식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탈비행의 인과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들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은 전환점적 사건들, 비행 환경과의 단절, 일상 활동의 구조적 변화, 점증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 탈비행자의 주체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탈비행의 인과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낙인, 처벌, 격리보다는 가족, 학교, 기타 사회제도와의 애착과 유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탈비행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탈비행 과정, 생애과정이론, 범죄학

* 이 논문은 2015년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hskwon@chosun.ac.kr, 제1저자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yun.ilhong@gmail.com, 교신저자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일부 서구 선진국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 퇴원(退院) 후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 Sickmund, 2006; Wartna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원 출원생(出院生) 중 약 2/3정도가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권해수·이연상, 2013). 소년보호기관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과 처우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 비추어 소년원 등 소년보호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소년범 처우 및 교육 등에 있어 점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소년재범률을 오로지 소년원 등의 소년보호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소년원과 교도소 등의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시킨 후 그들의 생활과 정신을 통제하며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종의 ‘전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이다(Goffman, 1969). 이러한 전체적 기관에서 사회로의 재복귀는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먼저 소년원 재원 기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이를 회복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소년원 퇴원 후 대부분의 소년들은 최초 자신들이 비행을 저질렀던 원래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환경 속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비행유발요인¹⁾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소년원 재원 시 습득했던 친사회적 가치관, 규율, 훈련 등의 효과를 급속히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James, Stams, Asscher, De Roo, & van der Laan, 2013).

한편, 사회생물학적 견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될 정도의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은 소년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부모의 무관심 및 학대, 신경유전학적 결손, 범죄유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사회적 신경회로(antisocial neural pathway)가 그들의 뇌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Walsh & Yun,

1) 경제적 어려움, 가정해체, 비행친구 등을 들 수 있다.

2014). 이러한 반사회적 신경회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등을 통해서 친사회적 신경회로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없다면 비행소년은 결국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Vaske, Galyean, & Cullen, 2011).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소년원 출원생(出院生)들의 높은 재범률은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이 5회 이상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인범죄자로 전이(轉移)될 확률이 무려 86.3%에 달한다고 나타났다(최인섭·이순래, 2009). 대부분의 소년사범들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소년원에 입원(入院)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년원 출원생들의 상당수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한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소년사범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누적된 방대한 범죄학 이론들과 연구결과들은 소년사범의 미래가 반드시 어두울 필요는 없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년사범들은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만, 모든 소년사범들이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로 점철(點綴)된 청소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탈비행(desistance)에 성공한 소년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성인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례 또한 셀 수 없이 많다(Kazemian, 2007; Laub & Sampson, 2003). 그렇다면 소년범 중 탈비행에 성공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무엇일까? 또 소년범이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한가?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인과과정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구체적 인과 과정이 먼저 규명되어야만 소년사범 기관이 효과성 있는 개입과 처우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의 탈비행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범죄학계는 탈비행의 인과 관계에 관해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축적해왔다. 현대 학자들은 Sampson과 Laub의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life-course theory)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탈비행의 인과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Laub & Sampson, 2001: 2003, Sampson & Laub,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탈비행의 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론적·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탈비행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방법론상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II. 탈비행의 기본 개념과 측정 방법

1. 탈비행의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학자들은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탈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탈비행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의 발생 유무’가 아니라 ‘범죄의 비발생 여부’가 된다. 또한 범죄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탈비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Maruna(2001)는 탈비행을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이라고 정의하였다.

탈비행은 ‘범죄의 비발생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범죄학적 관점에서 해석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탈비행의 개념 속에는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 따라서 범죄경력의 종결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탈비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Laub & Sampson, 2001). 부연하면, 탈비행은 시간상 특정 시점이 아닌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 비흡연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비흡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연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흡연자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비흡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금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탈비행에 성공한 듯 보여

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과연 범죄자가 진정으로 탈비행에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범죄자가 추가 범행 없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 지라도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수준에서 탈비행의 개념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한다. 그러나 탈비행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각자의 필요 및 선호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탈비행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탈비행의 측정 방법

탈비행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탈비행 상태가 지속되어야만 탈비행이 완성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마약 등 중독 연구의 경우 통상 3년, 암질환 연구의 경우 통상 5년의 기간 동안을 관찰하여 그 재발유무를 단정한다(Vaillant, 1996). 탈비행 연구는 보통 6개월이나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을 관찰하여 탈비행 여부를 측정하여 왔다(Laub & Sampson, 2001). 물론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 출원 후 약 6개월 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한다(권해수·이연상, 2013). 그러나 과연 연구기간 동안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탈비행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국내외 연구를 불문하고 연구기간 동안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비재범자로 분류되는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연구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탈비행의 성공과 실패가 인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

범죄자들의 생애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많은 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후 다시 어느 정도 범행을 자제하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종의 표류(drift) 또는 지그재그(zigzag)식 행동패턴을 보인다(Clarke & Cornish, 1985; Glaser, 1969; Laub &

Sampson, 2003). 그렇다면 몇 개월 또는 몇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재범 여부를 관찰하여 탈비행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의 범죄학적 연구들은 탈비행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재범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표본 집단의 재범률이 낮게 측정되었더라도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범죄 경력을 표류의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비록 일정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탈비행을 위해서는 비행을 저지른 자 뿐만 아니라 비행이 잠시 표류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우나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형사사법기관의 처우나 개입의 효과는 이처럼 표류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즉 재범의 유혹과 힘겹게 싸우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탈비행의 측정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가 탈비행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안에 탈비행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라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에 치중해왔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탈비행의 개념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이분법적 측정은 해당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탈비행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탈비행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Laub & Sampson, 2001; Loeber & LeBlanc, 1990). 예를 들면, Loeber와 LeBlanc(1990)는 과거에 비해서 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행위의 빈도수와 종류가 줄어드는 경우도 각각 탈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탈비행 연구는 재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찰의 체포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Laub & Sampson, 2001). 이와 같은 형사사법 기관의 공식 자료는 재비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또 활용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같은 비공식 자료를 이용하여 재비행 여부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문조사의 경우 소년 사범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자료의 획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범이 재비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경찰에 발각되지 않은 경우 공식자료에 의하면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부정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상당히 많은 양의 범죄가 체포나 유죄선고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abinski, Hartsough, & Lambert, 2001). 또한 공식 자료에 의해 재비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동일한 비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소년범은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으로부터 훈방 또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향이 짙다(Yun & Lee, 2013). 마찬가지로 소년의 범행에 대해 부모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년과 강한 유대 또는 애착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재비행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형사사법 기관의 공식 자료는 자기보고식의 비 공식자료에 비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LeBlanc과 Frechette(1989)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소년사범들을 같은 기간 동안 관찰한 결과 공식 자료에 의하면 62%의 소년들이 탈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보고식 자료에 따를 경우에는 오로지 11%만 탈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년기에 한두 가지의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어도 저절로 탈비행에 이르게 된다. 즉, 청소년기의 경미한 비행은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탈비행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비교적 심각한 종류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만을 탈비행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ampson & Laub, 1993).

마지막으로 탈비행에 성공한 자들 중에는 비록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여전히 본인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다양한 일탈행위를 지속하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Laub과 Sampson(2003)의 전과자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탈비행에는 성공했으나 평생동안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빠지며

일정한 직업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또는 사생아(私生兒)를 출생시킨 후 전혀 돌보지 않는 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는 암과 같은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고 다른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과연 이러한 경우까지 탈비행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국민 홍보 또는 보고를 중시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범죄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일탈 행위들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그 형태만 달리하여 표출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상술한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에 있어 탈비행 측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 동안 연구자들은 일정한 합의 없이 각각 상이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탈비행 연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탈비행 측정에 있어 연구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탈비행 측정 기간과 관련하여 과연 가장 이상적인 관찰기간이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탈비행’ 연구가 아닌 ‘재비행’ 연구임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범죄자의 범죄경로가 표류하는 식의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 및 탈비행 개념 자체가 사건의 발생여부가 아닌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탈비행을 이분법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Loeber와 LeBlanc(1990)의 조언을 받아들여 보다 광의의 탈비행 개념을 실증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자료 외에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탈비행을 측정하는 것이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의 비율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자들의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없이도 탈비행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을 탈비행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비교적 심각한 종류의 비행을 장기간 동안 일삼는 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행 경력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 연구 중에 탈비행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또한 소년법들을 장기간 동안 관찰한 종단적 연구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연구가 비

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거나 인생경로에 있어 한 시점만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권해수·이연상, 2013; 박한샘·오익수, 1998; 이희연, 2005). 예외적으로 전선영과 문성호(2015)는 총 6년을 관찰기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반적인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 대상이 되는 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의 다른 국내 연구들 또한 탈비행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자들로 국한시켰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경숙·남현우, 2012; 2014; 이은주, 2012; 정익중, 2009).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들이 탈비행 측정 및 그 연구 대상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자세한 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우수한 방법론을 적용한 서구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서구의 장기적 종단연구 중 개인의 일생동안의 범죄력을 조사한 범죄경력연구(criminal career research)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Blumstein & Cohen, 1987; Farrington, 1986; Piquero et al., 2001). 첫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총 숫자는 줄어든다. 서구의 경우 10대 후반의 사람들이 범죄 및 비행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후 20대 초반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나이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총 범죄참여자들의 수는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며²⁾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 여부를 불문한다.

둘째,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정한 양의 범죄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범죄행위의 지속성(continuity)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비행을 시작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일탈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비행의 지속성은 최초 비행을 저지른 연령이 어릴수록 또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행경력도 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Blumstein & Cohen, 1987; Sampson & Laub, 1993).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 범죄자들의 경우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행 횟수와 강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범죄경력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일생

2)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은 10대 후반이 아닌 30대 또는 40대에 나타나서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정은경, 2014). 그러나 이는 높은 암수범죄율을 고려하지 않고 공식통계에 치중한 연구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로서 일종의 범죄율 왜곡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경력 기간은 대부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Blumstein & Cohen, 1987; Piquero et al., 2001). 20대 후반에 절도, 강도,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경우 잔여 범죄 기간은 대부분 평균 5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30대에도 왕성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잔여 범죄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0대 초반부터는 탈비행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Blumstein & Cohen, 1987).

셋째, 아동기부터 비행을 시작하고 청소년기에도 계속해서 비행을 일삼는 지속적 범죄자들 중에서도 청년기 및 성년기에 탈비행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 통상의 범죄학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위는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즉, 범죄학 이론들은 비행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행의 지속성을 보편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탈비행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탈비행의 예측 요소는 다양하였으나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공통 요소들은 노화, 결혼 등을 통한 가족 유대, 안정적 직업, 그리고 정체성 변화를 들 수 있다(Laub & Sampson, 2003; Sampson & Laub, 1993).

4. 탈비행 과정에 대한 이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탈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mechanism) 또는 구체적 인과과정은 무엇일까? 그동안 서구의 범죄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탈비행의 인과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의 이론들을 개진하여 왔다. 본 고에서는 성숙 및 노화이론, Moffitt의 이론, 사회학습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장에서 Sampson과 Laub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가. 성숙 및 노화 이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는 어느 정도 비행을 저지르지만 20세를 넘어서게 되면서부터는 비행을 그만두게 된다. Glueck과 Glueck(1974)은 이러한 현상을 성숙(maturation)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숙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숙을 통해 사회의 규범과 규제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나이에도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생물학적 손상 및 환경적 결손으로 인해 충분한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숙이론과 유사한 이론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강조한 노화(aging)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생명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과정에 따른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성숙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탈비행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탈비행은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학 이론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단, 성인이 되어서도 비행을 지속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비교적 낮은 자기통제력(low self-control)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성숙 및 노화이론은 탈비행이 생물학적 성숙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그 외 생애 과정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결혼, 취업, 또는 정체성의 변화 등은 탈비행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탈비행이 성숙 또는 노화 외에도 애착, 사회적 자본의 형성, 기타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Glueck & Glueck, 1974; Laub & Sampson, 2003; Maruna, 2001)와 부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 Moffitt 이론

Moffitt(1993)은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고 해당 그룹에 따라 탈비행의 행태가 다르게 노정(路程)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생애지속형 범죄자들”(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s)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아동기 때부터 비행행위를 시작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전 생애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일탈을 일삼게 된다. 이들은 정상인에 비해 뇌신경학적 손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심각한 반사회적 성향과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족, 학교, 친구, 기타 사회의 구성원들과 친사회적 유대 관계를

를 형성하지 못하며 결국 평생 동안 범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Moffitt(1993)은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비행의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탈비행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도 결혼 또는 취직 등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실제 탈비행에 성공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이들의 일생은 일탈과 범죄행위로 점철되어 삶의 모든 국면이 반사회적 성향에 물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이나 기회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adolescence limited offenders)은 아동기 시절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뇌신경 손상도 입지 않은 다수의 정상적인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생애지속형 범죄자들과 달리 아동기에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기 동안 성인들의 역할과 지위를 갈망하게 되고 생애지속형 범죄자들을 흉내 내며 흡연, 음주, 성관계 등 경미한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 등을 일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나고 어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저절로 탈비행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친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애지속형 범죄자들에 비해 비행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은 비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탈비행 연구를 행할 경우 실익은 없다. 결국 Moffitt은 탈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들은 모두 탈비행에 성공하지만 생애지속형 범죄자들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없는 한 탈비행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Moffitt의 주장은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비행을 일삼은 생애지속형 범죄자들 중에서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전환점적 사건을 계기로 탈비행에 성공하는 다수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 사회학습(social learning) 이론

Akers(1998)의 사회학습이론은 탈비행보다는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성된 범죄학 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비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differential association), 그들로부터 반사회적 태도와 정의(defin-

ition)를 습득하며 그들의 행위를 모방(imitation)하고 그들이 자신의 비행행위를 인정(social reinforcement)해 줄수록 더욱 더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Akers(1998)는 사회학습이론이 탈비행 현상 또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탈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며 그들로부터 친사회적 태도나 정의를 습득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며 그들이 자신의 친사회적 행위를 인정해줌에 따라 탈비행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할 때 비행 또는 탈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들의 비행성향이다. 자신의 친구들이 대부분 비행을 일삼는 경우 본인 또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친구들이 대부분 친사회적인 경우는 본인 또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탈비행은 과거 교제하던 일탈행위자들을 멀리하고 반대로 친사회적 행위자들을 점차 가까이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학습의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한 탈비행 설명은 일부 경험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Warr, 1998). 그러나 보다 최근 연구(Sampson, Laub, & Wimer, 2006)에 의하면 친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타인들과의 교류 사실 자체보다는 그들과의 교류에서 얻어지는 애착 또는 사회적 자본이 탈비행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학습이론에 비해 사회통제이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Ⅲ. Sampson과 Laub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

1. 배경

앞서 설명한 탈비행에 관한 이론들은 사실 순수하게 탈비행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보다는 기존 범죄학 이론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경험적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중에 사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ampson과 Laub(1993)의 이론은 사람의 생애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의 개시(onset), 지속(continuity), 그리고 탈비행(desistance) 현상을 오롯이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먼저 Sampson과 Laub(1993)은 기존의 범죄학이론들이 탈비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비행의 지속성³⁾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인, 통제, 긴장, 학습이론 등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들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비행촉발요인이 존재하는 한 비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확립된 범죄적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성숙 또는 노화이론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즉, 모든 인간은 성숙과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별도의 외부적 영향 없이 저절로 탈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성숙 또는 노화이론에 따르면 탈비행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자연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이론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Sampson과 Laub(1993)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과거가 비행촉발요인들과 비행행위들로 심각하게 점철되어 있을 지라도 인생의 전환점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범죄자의 틀을 벗어던지고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Sampson과 Laub은 비행의 지속성 보다는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탈비행은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며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과 접촉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즉,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생애과정이론은 한 개인이 인생행로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이 개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Elder, 1998). 이와 관련하여 Sampson과 Laub(1993)은 인생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중 특히 결혼, 취직 또는 군입대에 방점을 두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생성되는 애착과 유대가 탈비행을 가능케 하는 직접적 기제임을 강조한다.

Sampson과 Laub(2003)은 자신들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범죄학 연구의 역사상 가장 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연구는 그들이 Glueck 부부(1968)의 과거 연구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

3)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탈행위를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일탈행위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능했다.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던 Glueck 부부(1968)는 1940년대에 보스톤 지역에서 소년원 수감 경력이 있는 비행청소년 500명과 비행경력이 없는 청소년 500명의 인생경로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14세이던 1940년에 처음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하였고 그 후 다시 그들이 25세일 때와 32세일 때 추가 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Glueck & Glueck, 1968). 그 후 이 자료는 하버드 법대 도서관 창고에 묻혀 있다가 1987년 Laub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Sampson과 Laub(2003)은 그 후 6년간 이 자료의 대상자들을 추적하였고, 심층면접조사와 생애사 내러티브(life history narrative) 분석 등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마침내 1993년에 *Crime in the Making*이라는 책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입각한 생애과정이론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가 70세에 이르렀을 때 다시 대상자들의 일부를 추적조사 하였고, 원래의 이론을 보강하여 2003년에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Sampson과 Laub(2003)의 이론은 거의 60년에 걸쳐 비행청소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물로서 탈비행 현상의 인과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탈비행의 인과 과정

Sampson과 Laub의 이론(1993)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을 그 발판으로 삼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비행을 개인이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유대와 애착이 약해질 때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학교에 대한 애착과 유대가 약한 경우,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는 배우자와 직업에 대한 애착과 유대가 약할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Sampson과 Laub(1993)의 연구에서도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안정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실패했고 학교도 중도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자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유대관계 형성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아동기에 비행을 시작했던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적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범행을 일삼는 성인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즉 다른 수많은 범죄학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비행의 지속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ampson과 Laub(1993)의 종단연구에서는 탈비행의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절한 유대관계 형성에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비행의 길을 걸었던 소년들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맞이하여 새로운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탈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들 중 가장 공통적인 사건들은 결혼, 취업, 그리고 군 입대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들이 저절로 인생의 전환점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의 경우에도 단순히 결혼을 했다고 해서 탈비행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탈비행에 이를 수 있었다. 애착이 없이 결혼한 경우⁴⁾에는 전혀 탈비행의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취업의 경우에도 직장이 안정적이고 고용주 또는 동료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직장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경우에는 탈비행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Sampson과 Laub(1993)은 비행청소년들이 인생과정 중에 겪게 되는 중요 사건인 결혼, 취업, 군 입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과정을 통해서 탈비행에 이르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과과정의 첫 번째 요소는 비행청소년의 환경, 즉 비행 유발 요소가 산재한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이런 단절의 효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군 입대이다. 군 입대는 비행 유발 요소 중 가장 강한 영향 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거의 완벽하게 또한 급작스럽게 단절시킴으로써 탈비행 가능성을 높인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단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Osborn(1980)은 영국 런던에 살던 비행청소년들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청소년들의 비행률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비행친구와의 단절을 탈비행 과정의 시초로 본다면 결혼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혼은 청소년기와는 다른 새롭고도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일생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4) 임신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늘어나게 되면서 친구들과 할 일 없이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감소할수록 개인의 비행 행위 또한 줄어든다는 것은 범죄학계에서 거듭 입증된 분명한 사실이다(Akers, 1998; Warr, 1998). 직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의무 또한 개인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비행친구와의 교제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혼 또는 직장생활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대부분이 소소한 것들이어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탈비행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직장에서 겪게 되는 소소한 일상 활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애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더불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대화하며 출근하고 퇴근하는 행동 등이 습관화되게 되면 이런 습관은 결국 소년의 하루 생활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틀 또는 구조를 형성해주게 된다. 이러한 애착, 유대, 그리고 일상생활의 틀 또는 구조는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 기능을 담당하여 비행청소년을 탈비행의 길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Sampson과 Laub(1993)은 위와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와 유대 및 애착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Coleman, 1988). 쉽게 말해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원 또는 네트워크의 한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고 물질 또는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한 사회구조 또는 관계 속에서 구성원끼리 상호간에 애착과 유대가 강한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다고 할 수 있다.

Sampson과 Laub(1993)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나 일상생활의 변화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에만 탈비행이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결혼 자체만은 탈비행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 간에 강한 유대가 형성되어 사

5) 법 또는 형사사법기관 등 공식적 기관의 위하(deterrence) 기능을 통하여 비행을 억제하는 것은 공식적 사회통제, 그 외의 비공식적 기관(가족, 학교, 동료관계, 소문 등)을 통해 비행이 억제되는 것은 비공식적 사회통제라고 한다.

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비공식적 통제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탈비행에 이를 수 있다. 장기간의 물리적·정서적 투자를 통해 높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커지게 된다. 비행으로 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는 소위 ‘순응에의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가 높아지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것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의 핵심 명제이다. 마찬가지로 직장의 경우에도 오로지 경제적 보수만을 위해서 또는 외부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직장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탈비행도 용이하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회적 자본도 갑자기 만들어지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증적으로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 통제 기능도 장기간에 걸쳐 점증적으로 그 틀을 갖추게 되고 탈비행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비행청소년이 갑자기 새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사례는 탈비행의 전형적 행태가 아니라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소년원 재원생들이나 교도소 수감자들 또한 출소와 더불어 자신이 곧바로 ‘새사람’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Glaser(1969)의 연구에 의하면 수감자들은 출소하면 곧바로 직장을 구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자격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정보시대로 불리는 현대의 직업 시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요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결국 대부분의 출원생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Sampson과 Laub(1993)은 인생 경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 애착과 유대, 사회적 자본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을 들어 탈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들은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가 70세에 이르렀을 때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탈비행자의 주체성(human agency)을 강조한 제2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Laub & Sampson, 2003). 그들은 탈비행에 성공한 대상자들에게 대한 면담(interview) 및 내러티브(narrative)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탈비행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identity)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비행청소년들은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스스로를 운명의 능동적 개척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족이나 직장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아개념과 인식 변화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탈비행에 성공한 폭력사범과 재산범 모두에게 공히 나타났다. Maruna(2001) 역시 교화에 성공한 전과자들에게 대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변화를 발견하고 정체성의 변화는 탈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체성의 변화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본인의 강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반대로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애착과 유대가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쌓여가는 비교적 오랜 과정 속에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됨에 따라 순응에의 이해관계가 커지게 되고 비행으로 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면 저절로 내적인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간 내에 소년범들의 교화를 꾀하는 소년사법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탈비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탈비행 실패의 원인을 소년사범들의 의지 부족으로만 돌리는 우리 사회의 태도 또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식의 병영캠프(boot camp)와 같이 비행 청소년들의 의지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 또한 실패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이성철, 2002).

Sampson과 Laub(1993)은 정체성의 변화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전이하는 과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자신이 일삼았던 비행행위들은 ‘더 이상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임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기에 위험하고 스릴(thrill) 있는 행동을 통해 얻었던 정신적 보상의 강도가 성인기에는 훨씬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비행 욕구 또한 약해진 점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인간의 뇌 보상 중추가 사춘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최근 뇌신경학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Steinberg, 2009). 탈비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은 삶의 기간이 유한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시간의 중요성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수감(收監) 경력을 일종의 ‘훈장’으로 인식하였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감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즉 비행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비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뇌에서 통제, 계획, 평가 등의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이 사춘기를 지난 후 성인이 되어서야 완전히 성숙된다는 뇌과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teinberg, 2009).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점은 탈비행에 성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던 자들도 종종 결혼과 취업이 자신의 자유를 옳아맨 일종의 덫으로 느끼며 과거 비행을 일삼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향수에 잠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자원을 버리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Sampson과 Laub의 연구(1993, 2003)는 탈비행 과정에 대해서 다소 지엽적이고 분산된 정보 전달에 그쳤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탈비행의 전체적 인과 과정에 관해 풍부하면서도 세밀한 경험적 지식을 선사한 범죄학적 연구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연구가 비행청소년들의 인생 과정을 무려 50년 이상이나 관찰한 장기 종단연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이 사회조사방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량학적 조사방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은 추가탐색적 질문(probing)을 활용한 심층 면접조사 기법을 통하여 통상의 질문지 조사로는 얻기 어려운 세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생애사 내러티브(life history narrative) 분석⁶⁾은 연구대상이 사건발생의 유무가 아닌 탈비행

과 같은 ‘과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탈비행자들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설문 조사에서 탈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결혼, 취업, 주변 환경의 변화였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탈비행자 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탈비행자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Sampson & Laub, 2003). 만약 이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탈비행자 본인들의 개인적 주체성(human agency)이 탈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간과되었을 지도 모른다.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은 비행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특히 비행을 처음 시작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다시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Akers, 1998; Gottfredson & Hischi, 1990).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형사정책은 아동기의 범죄유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탈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탈비행 요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 Laub과 Sampson(2003) 또한 비행의 지속성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비행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 발생한 사건, 애착, 사회적 자본 등이 탈비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탈비행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적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미래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미래 나름대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 비행 유발 요소와 비행 경력만을 바탕으로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했던 수많은 연구들이 왜 허위양성과 허위음성의 예측을 빚어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Gendreau, Little & Goggin, 1996). 따라서 Laub과 Sampson(2003)은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행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비공식적 통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탈비행화 정책들을 추천한다. 교정학의 대가(大家)로 인정받는 Andrews와 Bonta(1994) 역시 시간적으로 먼 정적(靜的) 범죄유발요인들 보다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역동적 요소의 개선에 치중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Uggen와 Piliavin(1998)은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

6) 대상자들의 일생에 거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하나의 줄거리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정책보다 탈 비행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정책의 실행면에 있어서도 더 쉬울 수 있다는 견해를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Sampson과 Laub(1993, 2003)의 이론과 연구는 비행 예방과 탈비행의 핵심동력이 친사회적 애착과 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저지르는 비행 행위 자체는 가족, 학교, 기타 사회제도에 대한 애착과 유대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화된 애착과 유대는 소년이 친사회적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이런 기회의 축소는 다시 비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Sampson과 Laub(1993)은 이와 같은 현상을 ‘누적적 지속성(cumulative continuity)’이라고 부른다. 누적적 지속성은 교정기관에 수감된 경험으로 인해 더욱 커지게 되고 출원(出院) 또는 출소(出所) 후 미래의 교육, 직장, 결혼 등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친사회적 애착과 유대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aub과 Sampson (2003)은 특히 청소년기에 교정기관에 장기간 수감되었을 경우 누적적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어 취업 등 탈비행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따라서 Sampson과 Laub은 소년범들을 소년원에 장기간 수감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범죄자 처벌의 목적은 예방, 응보 및 무력화(incapacitation)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재범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용기관에의 수감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서구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학 및 범죄학의 권위자인 Lawrence Sherman(1993)의 저항이론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Sherman은 사법적 처벌의 재범 예방 효과가 처벌 자체의 성격과 피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벌 자체가 재통합적(reintegrative) 성격을 띠기보다 낙인적(stigmatizing) 성격을 띠는 때 피처벌자에게는 사법 체계에 대한 저항 심리가 생겨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재통합적 처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에 부합하는 처벌이다. 즉, 범죄자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관계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간적인 대우와 존중을 받는 경우이다. 낙인적 처벌은 그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는 식의 대우를 받은 경우이다(Braithwaite, 1989).

피처벌자가 처벌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역시 저항 심리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처벌자가 처벌받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에는 재범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

Sherman(1993)은 피처벌자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에 애착과 유대가 있고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벌 자체를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처벌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 또한 재통합적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장기적 수감은 소년범이 처벌 자체를 낙인으로 여기게 하고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할 소지를 높인다. 그럴 경우 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심리가 생기고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재범의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범의 장기수감은 누적적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Sampson과 Laub(2003)의 지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범죄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심각한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Sampson과 Laub(2003)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장기 종단연구는 비행의 지속성과 탈비행의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애착과 유대가 결여되면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이러한 비행 사실 자체는 누적적 지속성으로 연결돼 성인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누적적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탈비행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Sampson과 Laub은 탈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바로 애착과 사회적 자본을 통한 비공식적 통제의 형성, 일상 활동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임을 강조한다. 전환점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한 시기에 경험하는 비행청소년들은 탈비행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을 경험하지 못한 비행청소년들은 결국 생애 지속형 범죄자로서의 일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무리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고 개전의 징이 보이지 않은 소년범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 전환점적 계기를 맞게 되면 탈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항상 있는 법이다. 형사사법 당국도 희망을 갖고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해수·이연상(2013), 탈비행에 성공원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 실태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1(3), 125-136.
- 김경숙·남현우(2012), 중기 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예측요인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3(4), 131-157.
- 김경숙·남현우(2014), 탈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5(2), 209-236.
- 박한샘·오익수(1998), 탈비행화 과정 탐색에 대한 현장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1), 60-92.
- 이성칠(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은주(2012),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 이희연(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16(1), 383-419.
- 전선영·문성호(2013), 청소년 탈비행의 유형 및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95-415.
- 정은경(2014),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5(1), 101-122.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최인섭·이순래(2009),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Andrews, D., & Bonta, J. (1994).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incinnati: Anderson.
- Babinski, L., Hartsough, C., & Lambert, N. (2001). A comparison of self-report of

- criminal involvement and official arrest records. *Aggressive Behavior*, 27(1), 44-54.
- Blumstein, A., & Cohen, J.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85-91.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Clarke, R., & Cornish, D. (1985). Modeling offenders' decisions: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In M. Tonry & N.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6, pp.147-18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Farrington, D. (1986). Age and crime. In M. Tonry & N.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7, pp.189-2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 James, C., Stams, G., Asscher, J., De Roo, A., & van der Laan, P. (2013). After-care programs for reducing recidivism among juvenile and young adult offende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2), 263-274.
- Glaser, D. (1969). *The effectiveness of a prison and parole system*. Indianapolis: Bobbs-Merrill.
- Glueck, S., & Glueck, E. (1968).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in perspect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lueck, S., & Glueck, E. (1974). *Of delinquency and crime: A panorama of years of search and research*.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Goffman, E. (1969). The characteristics of total institutions. In A. Etzioni (Ed.),

- A sociological reader on complex organizations*, pp.312-338.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Kazemian, L. (2007). Desistance from crime theoretical, empirical, methodological, and policy consider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1), 5-27.
- Laub, J., & Sampson, R.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Vol.28, pp.1-6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ub, J., & Sampson, R.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Delinquent boys to age 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der, G.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 1-12.
- Loeber, R., & Le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onry & N.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12, pp.375-4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offenders reform and reclaim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oks.
- Moffitt, T.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
- Osborn, S. (1980). Moving home, leaving London and delinquent trend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54.
- Piquero, A., Blumstein, A., Brame, R., Haapanen, R., Mulvey, E., & Nagin, D. (2001). Assessing the impact of exposure time and incapacitation on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criminal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1), 54-74.

- Sampson, R., & Laub, J.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Laub, J., & Wimer, C. (2006). Does marriage reduce crime? A counterfactual approach to within-individual causal effects. *Criminology*, 44(3), 465-508.
- Sherman, L.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445-473.
- Snyder, H., & Sickmund, M. (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06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Steinberg, L. (2009). Should the science of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inform public policy?. *American Psychologist*, 64(8), 739.
- Uggen, C., & Piliavin, I. (1998). Asymmetrical causation and criminal desista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399-1422.
- Vaillant, J. (1996). A long-term follow-up of male alcohol abus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243-49
- Vaske, J., Galyean, K., & Cullen, F. T. (2011). Toward a biosocial theory of offender rehabilitation: Why doe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ork?.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1), 90-102.
- Walsh, A., & Yun, I. (2014). Epigenetics and allostasis implications for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Review*, 39(4), 411-431.
- Warr, M. (1998). Life-course transitions and desistance from crime. *Criminology*, 36, 183.
- Yun, I., & Lee, J. (2013). IQ and delinquency: The differential detection hypothesis revisited.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1(3), 196-211.

A Review of Criminological Theories on Criminal Desistance Process : A Focus on Sampson and Laub's Life-Course Theory

Kwon, Haesoo* · Yun, Ilhong**

There has been a paucity of systematic review on the theories of criminal desistance process.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review first addresses issues pertaining to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desistance. It then proceeds to introduce a list of desistance theories that have been proffered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current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Sampson and Laub's life-course theory, which is largely regarded as the most authoritative and definitive account of criminal desistance. A careful attention was given to the issues centering on turning points, knifing-off from criminogenic environments, structural changes of routine activities, incremental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importance of human agency. We additionally commented on recent findings from neuroscience that dovetail well with the above-mentioned issues. In terms of methodology,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research was emphasized. Lastly, as a policy implication, we suggest that lengthy incarceration of adolescents could result in detrimental effects that effectively hinder successful desistance.

❖ Keyword: desistance process, life-course theory, criminology

투고일 : 11월 30일 / 심사일 : 12월 18일 / 게재확정일 : 12월 18일

* Chosun University

** Chosun University